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공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미래를 경험하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주관: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 사업기간 : '2026. 6월 ~ 12월 ※일경험 기간 : 7월~11월(5개월)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사업대상
 - 마을기업,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지원내용
 - 참여 청년 인건비(월 209시간 개근 시 2,338,292원/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4대보험료 기업부담금(11.47%)
 - 월 20만원(운영비, 1인당)
 - 월 15만원 지원(멘토수당 1인당)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6. 12.(금)~6. 18.(목)까지
- 모집규모 : 참여청년 134명,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모집대상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 2026. 5. 31. 기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예:청년센터)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예:사회적경제연합회 등)
-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참여여부
마을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가능
협동조합이면서 인증 사회적기업인 경우	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인증 사회적기업인 경우	불가

-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계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③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될 것(*사업결과보고서, 협약서, 공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 제출)

- 참여기업 선정 후 개별연락

○ 참여제한

-참여기업의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①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자
 - ※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 ③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⑥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⑦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3 신청개요

○ 신청유형

- ①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②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 ◆ (창업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예: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 ◆ (신규 직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유형	기본 직무	(예시) 신규 직무
돌봄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주거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로컬푸드	도시락, 밀키등 제공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서식	필수
1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서식1	필수 제출
2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2	
3	참여기업 서약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7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8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텍스 발급분	
9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025.12.1.~2026.5.3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0	가점 증빙서류	(붙임1) 심사기준 참고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참여기업 선정	약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모집 ▶ 청년 대상 사업 홍보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공고에 따라 운영기관 등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업 제출서류 미비시 보완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등) 참여기업 심사·평가 후 최종 선정 통보 ▶ 선정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참여기업) 약정 체결 ▶ (기업) 약정 체결 후 참여 청년 면접 실시 및 선발
6월	6월	7월	7월

○ 선정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참여기업 규모	<p>• 전년도 기준 매출액(15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5억원 이상</th> <th>2억원 이상 ~5억원 미만</th> <th>1억원 이상 ~2억원 미만</th> <th>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h> <th>5천만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r> </tbody> </table>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5	12	9	6	3	25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5	12	9	6	3								
<p>※ 매출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음</p>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10점)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 - 마을기업, 협동조합 <table border="1" data-bbox="376 459 1302 600"> <tr> <td>10인 이상</td> <td>7인 이상 ~10인 미만</td> <td>5인 이상 ~7인 미만</td> <td>3인 이상 ~5인 미만</td> <td>1인 이상 ~3인 미만</td> </tr>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able> - 비영리법인·단체 <table border="1" data-bbox="376 692 1302 833"> <tr> <td>7인 이상 ~10인 미만</td> <td>5인 이상 ~7인 미만</td> <td>3인 이상 ~5인 미만</td> <td>1인 이상 ~3인 미만</td> </tr> <tr> <td>10</td> <td>7</td> <td>5</td> <td>3</td> </tr> </table>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8	6	4	2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7	5	3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8	6	4	2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7	5	3																	
직무설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절한 난이도인가? •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25																		
지원 및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었는가? •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25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25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10																		

5 지원개요

○ 지원금 지급 절차

참여기업→참여청년·참여멘토	참여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청년) 본인계좌로 인건비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멘토수당) 참여멘토 계좌로 멘토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신청서, 출석부,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멘토 면담일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급여지급일	익월 5일 이내	익월 20일 이내

○ 지원금 내용

항목	지원금액	지급방법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임금 2,338,292원 (시급 11,188원, 유급주휴 포함, 세전)	참여기업 법인계좌
운영비	1인당 최대 월 20만원	
멘토수당	1인당 최대 월 15만원	
4대 보험료	기업부담분	

○ 지원 일반사항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은 참여기업 자부담(연차수당 등)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지급
- *출석률: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 :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출석률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지원금액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20만원	15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6만원	10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12만원	7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6 일반사항

□ 참여청년 관리사항

참여청년 자격조건

- (연령) 2026.1.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고용)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자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 단,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③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④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참여청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계약조건: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참여청년 합의 필요)
- 근무내용 : 운영기관에 제출·승인받은 '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른 업무(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
- 근태관리 : 자체시스템(전산, 수기 출석부 등)을 통해 참여청년 근태현황 관리

○ 일경험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 (역할)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
-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검직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선정)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

- (멘토자격)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한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 (멘토링 운영) 참여멘토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청년 수료사항

○ (직무교육 참여) 총 20시간(1일 최대 8시간) 필수 참여

- 교육내용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참여청년 직무 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
-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등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대면·유선·온라인 등) 필수 참여
- (수료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근(출석)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 사업 운영관리

-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청년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적극 협조
 -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 중단,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6 서류접수 및 문의

□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지역]

- 서류 이메일 접수 : asanymca2026@naver.com
- 문의 **아산YMCA** : 041-546-9877

□ 남부권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지역]

- 서류 이메일 접수 : cncse2604@naver.com
- 문의 **(사)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 041-408-7000